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박세진 의원 외 9명

2. 제안이유

교육부의 201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우리 시의 저학력, 비문해 성인의 문해력 증진을 통해 교육의 평등권 구현 및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인”과 “문해교육” 및 “성인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지원대상은 비문해, 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안 제3조).
-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성인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육 계획 수립 등 시장의 임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
- 성인 문해교육기관·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함(안 제8조).
-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 교사·강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이들의 연수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 제5조, 제9조, 제39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성인 문해교육의 목적과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성인 문해교육의 대상 범위를 정의하였고
-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의 균등 제공 및 기본인권존중 등 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시장의 구체적 임무 등을 명기하였으며

- 비문해자에 대한 교육지원과 관련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한 필요한 경비지원, 공공시설 이용과 성인 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성인 비문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지원으로 성인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문해교육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는 약3만2천명이며 65세 이상 인구(24,233명)의 77%인 18,737명, 20세 ~ 64세 이하 인구(263,368명)의 5%인 13,085명이 문해교육 대상자로, 조례가 제정될 경우 비문해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할 것으로 사료됨.

-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 계 법 령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 2. 생략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

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